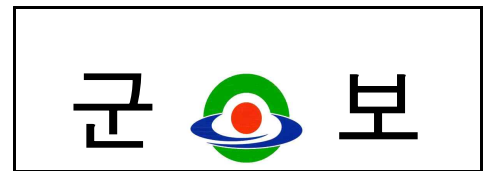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79호 2022. 7. 28.(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공덕2리 농어촌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변경(제2회)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2-72호)

공 고

-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2-1019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공덕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변경(제2회) 고시

공덕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7. 28.

예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공덕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공덕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여건 개선, 재해위험시설 정비, 주택개량 등을 통한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함

3. 사 업 비 : 2,217백만원(국비 1,645 / 지방비 534 / 자부담 38)

4. 주요 사업변경 내용

☐ 노후주택 정비

- 슬레이트 지붕 철거 30호, 슬레이트 지붕 개량 21호
- 빈집 철거 25호, 노후 집수리 7호

☐ 안전·위생 확보

- 재래식 화장실 정비 2호, 하수도설치 240m, 옹벽설치 979m
- 재래식 화장실 정비 2호, 하수도설치 240m, 옹벽설치 1,113m
- CCTV 설치 5개소, 가로등 4개소

☐ 기초생활 인프라

- 마을안길정비 30m, 우수관로설치 439m
- 마을안길정비 30m, 우수관로설치 439m

☐ 주민공동시설

- 경로당 리모델링 1식, (구)마을회관 리모델링 1식

☐ 경관시설 정비

- 담장정비·도색 1식, 마을주차장 조성 1,243㎡

☐ 휴먼케어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1회, 클린서비스 2회, 주민화합 한마당 2회

☐ 주민역량강화

- 주민공동체 활성화 1회, 전문가초청교육 1회, 선진지견학 1회
- 주민공동체 활성화 1회, 전문가초청교육 0회, 선진지견학 1회

5.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위·수탁 :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6. 사업시행기간 : 2019년 ~ 2022년(4년간)

7.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의 명세서

연 번	행정 구역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1	풍양면	공덕리	466	전	1,640	1,640	국(재무부)	-

8. 기타 궁금하시 사항은 예천군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054-650-7312)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054-650-7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개최 기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 건축물의 건축 등 심의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구조안전 심의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 선정 방법 변경(안 제13조)

○ 도지사가 작성한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업무대행자 선정

다.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변경(안 제25조)

- 적용 범위 : 남동에서 남서 → 시계 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 동 간의 거리 :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6배) →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거리 이상

라. 옹벽 및 공작물의 신고대상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6조)

-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
-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 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농·축산업 관련 저장시설은 제외
- 소각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소각로 제외

마.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20 가중(안 제27조)

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의 근거가 없는 조문 삭제(안 제3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제2호, 제14조, 제14조의2, 제29조제3항제1호·제5호 및 제4항 삭제)

사.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 강화(안 별표 2)

-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미만 : 1미터 이상 → 2미터 이상
-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 2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 바닥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 4미터 이상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blueblue141@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건축과

3) 팩스 : 054-650-63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축과(전화 : 054-650-63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7호, 제8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다. 영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로서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조제3항제2호자목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제3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 중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를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3조의2”를 “제93조의3”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법 제25조 제12항”을 “법 제25조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제2항”을 “영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제2호에 따라 작성·비치된 명부에서 추첨을 통해 업무대행자”를 “제1호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로, “업무대행자”를 “건축주 및 업무대행건축사”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명부에서 제외 할”을 “도지사에게 해당 업무대행건축사를 등록 명부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로 한다.

1. 업무대행자 지정은 도지사가 작성한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가 소수일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예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 및 제1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3조 중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을 “건축하는”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86조제2항제2호”를 “영 제86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

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 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제조시설”을 “제조시설(높이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저장시설”을 “저장시설(높이 6미터 이상)”으로, “유사한”을 “유사한 것(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농·축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각시설(「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소각로 제외)

제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27조의2제3항 중 “영 115조의4제2항제2호”를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안의 공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2】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3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 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량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5미터 이상

대 상 건 축 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
마. 공동주택	• 아 파 트 : 4.5미터 이상 • 연 립 주 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1미터 이상
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도축장·도계장, 자원순환 관 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 3미터 이상
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및 가 축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16호, 2014. 3.24.,일부개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제곱미터 미만 2)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3)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천제곱미터 이상	• 2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 4미터 이상

※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의 1/2 이상으로 한다.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2미터 이상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u>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u>)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5미터 이상

대 상 건 축 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도축장·도계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 3미터 이상
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16호, 2014. 3.24., 일부개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2)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3)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 2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 4미터 이상
아. 그밖에 <u>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u> 건축물	• <u>0.5미터 이상(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u>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건축위원회)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 항·제5항 및 「건축법 시행 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 조의5에 따라 예천군건축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 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다.	제3조(건축위원회) ①----- ----- ----- ----- ----- ----- ----- --.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 제2 호, 제4호, <u>제7호, 제8호</u> 의 심 의사항	1. ----- ----- <u>제7호</u> ----- -----
2.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의 분 <u>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u> <u>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u> <u>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u> <u>관한 사항</u>	<삭 제>
3. 삭제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7. <u>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자</u> <u>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u> <u>의에 부치는 사항</u>	7.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 른 심의사항으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 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생략)

③ 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략)

2. 심의 등에 관한 기준

가. ~ 아. (생략)

자.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

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

물

다. 영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로서 2,000제곱미

터 이상인 건축물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
및 제8호-----

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
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
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카. (생략)

<신설>

3. (생략)

제4조(적용의 완화) ①·② (생략)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에 따
른 건축물은 단독주택(다가구주
택 제외)으로서 연면적의 합계
가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④·⑤ (생략)

차.·카. (현행과 같음)

타. 제3조제1항 각 호의 심의
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신청 접수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은 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
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제4조(적용의 완화)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

-----.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2. (생략)

③ (생략)

제12조의3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적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93조의3 -----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 값을 적용한다.

③ ~ ⑥ (생략)

제1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생략)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 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5. (생략)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대행은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하고, 설계자가 건축사가 아닌 경우와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대행자 지정에 필요한 인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하고, 응모자가 소수일 경우에

② -----

--(한국부동산원)-----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 제20조 제1항-----

-----.

1. ~ 5. (현행과 같음)

③ -----

-----.

1. 업무대행자 지정은 도지사가 작성한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

는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예천
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
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라 구성된
업무대행자의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업무대행자 지정요청
이 있을 경우 제2호에 따라 작
성·비치된 명부에서 추첨을
통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배정
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업무
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예
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생략)

④ ~ ⑦ (생략)

⑧ 군수는 업무대행자로 선정된

작위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응모자가 소수
일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
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
사협회 예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선정
할 수 있다.

<삭 제>

3. -----
----- 제1호에 따라 업
무대행건축사-----

----- 건축
주 및 업무대행건축사-----.

-----.

4.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명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 5. (생략)

⑨·⑩ (생략)

제14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로서 당해 바닥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에게 해당 업무대행건축사를 등록명부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

1. ~ 5. (현행과 같음)

⑨·⑩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

원) ① 법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영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호가목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인 경우로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지원의 범위는 노후된 주택의 내·외부 개량 및 보수 비용으로 한다.

④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실내건축) ①·② (생략)

<삭 제>

제22조(실내건축)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
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
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
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
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2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
축물의 높이제한) ①·② (생
략)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
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
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
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
지를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 사
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
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
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
으로 본다.

제23조(대지안의 공지) -----

-- 건축하는 -----

제2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
축물의 높이제한)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생략)

2. 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는 0.8배)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2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 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거리를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2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

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u>제조시설</u> : 레미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u>저장시설</u>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 저장시설, 기타 이와 <u>유사한 것</u> 3. (생 략) 4. <u>소각시설</u> ② (생 략) 제27조(이행강제금 부과)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27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③ <u>영 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u>	----- --. 1. <u>제조시설(높이 6미터 이상)</u> - ----- ----- 2. <u>저장시설(높이 6미터 이상)</u> - ----- ----- <u>유사한 것(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농·축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인</u> - 3. (현행과 같음) 4. <u>소각시설(「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소각로 제외)</u>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이행강제금 부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가중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u> 제27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u>--
--	---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생략) 제29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운영) ①·② (생략)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 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 수에 따른 용자 및 보조 2. ~ 4. (생략) 5. 법 제81조의2에 따른 빈집 정 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 비 6. ~ 9. (생략) ④ 제3항제1호 및 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용자 및 보조는 제1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건 축물로 한다. ⑤ (생략)	-----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삭제> 2.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 9. (현행과 같음) <삭제> ⑤ (현행과 같음)
--	---